

2026년 2-7차 평생교육실습 안내문

▶ 강의 세부 일정 및 서류 제출 일정 ◀

▣ 전체 일정

수강기간	2026년 9월 4일(개강) ~ 2026년 12월 17일(종강)	온라인 강의 + 출석수업 + 현장실습
실습 가능 기간	2026년 9월 7일(월) ~ 2026년 11월 27일(금)	기간 내 <u>최소 4주, 총 160시간 이상</u> (실습규정 준수)

▣ 출석수업 날짜

개강 OT	2026년 9월 5일(토) 10:00 ~ 13:00	※ 주의: 오프라인 세미나 필수 참석 (불참 시 이수 불가)
종결평가회	2026년 12월 12일(토) 10:00 ~ 13:00	

▶ 출석수업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36 위너스빌딩,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 서류 제출 안내

1차 서류

실습 시작 3일 전까지 (평일기준) 반드시 보내주세요. (필히 원본 등기 발송) [현장 방문 접수 불가]	1. 평생교육 실습 의뢰서 및 실습 시간표	[학습자]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생 이 작성 ※ 공문 발송을 위해 실습기관 Fax 번호 또는 담당자 E-mail 주소를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2. 실습생 프로파일 (사진필수)	
	3. 평생교육 실습생 서약서	
	4. 성적증명서	[학습자] 실습 전 선 이수과목 (필수4과목 확인)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5.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기관]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참조
	6.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	[기관]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2급 - 2년 경력 3급 - 3년 경력
	7.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기관]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된 후, 실습기관에서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으로 실습 시작일 전까지 회보서를 반드시 발송해야 함.

2차 서류

<p>※ 1~7번 서류 원본 책 제본 (떡제본) 제출. 8, 9번 서류는 우편 동봉</p> <p>2026년 12월 4일(금)까지 (기한 엄수 요망)</p> <p>[현장 접수 불가]</p>	1. 실습지도 계획서	[기관]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기관 이 작성
	2. 실습생 출근부	[학습자]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생 이 작성 ※ 실습활동사진은 전체 일정 중 2장 이상 사진은 실습일지 내용에 부착하지 마시고, 별지를 만들어 준비 (사진은 인화 or 프린트 모두 가능)
	3. 실습일지 (실습활동 사진 2매 이상)	
	4. 실습 중간평가서	
	5.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확인
	6. 실습생 자기평가서	
	7. 실습지도 기록서	[기관]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기관 이 작성 ※ 8, 9번 서류는 실습기관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받아 실습기관이나 실습생이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 직접 발송
	8.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2부★	
	9.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2부★	

※ 주의 : 작성 오류 및 서류 미비로 확인될 경우 내용 보안을 위해 추가 서류를 재발송 해야 합니다. 상기 서류를 재차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실습지원센터 - 평생교육실습 클릭 - 1차서류/2차서류(양식) 통합 파일 다운로드

▣ 서류 제출 방법

우편번호 : 0312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36 위너스빌딩 3층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

※ 주의 : 모든 서류(원본)는 우편(등기) 발송을 원칙으로 함(제출 기한 준수) **현장 접수 불가**

▣ 성적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

성적확인	2026년 12월 28일 월요일 AM 10시 이후 확인 가능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www.kstudy.co.kr
학점인정신청	2027년 1월에 학점인정신청 가능 (학습플랜 담당자에게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www.cb.or.kr
자격증 신청	2027년 1월에 자격증 신청 가능 (신청 대상자 안내 예정)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www.kstudy.co.kr

▣ 현장실습비

실습기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별도 부담

※ 주의 :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료에 현장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평생교육실습 시 주의사항

평생교육실습과목 수강 자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수강이 완료된 학습자
현장실습 이수요건	개강 OT(오리엔테이션)를 이수한 학습자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

※ 주의 : OT(오리엔테이션) 참여 이전의 현장실습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가능 기간 참고)

■ 실습일정 및 실습시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표1] 준용
- 최소 3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실습만 가능
-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일 8시간(0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하여야 하나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 실습도 가능(실습 가능 시간은 09:00 ~ 22:00 까지 인정)
- ※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실습 중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본 교육원에 미리 연락하여야 함
- 일정 및 실습시간은 실습 시간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 실습기관 자격 요건(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참조)
 - 「평생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
-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 근로자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평생교육사여야 한다.
- 실습기관 정보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https://lledu.nile.or.kr/>) - 실습기관정보 - 실습생 모집 접속

■ 평생교육실습과목 출석 수업 2회(OT/종결평가회) 및 온라인 강의 1~7주차 수강

- 개강 OT(오리엔테이션)와 종결평가회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이수 불가
- ※ 주의 : 실습이 완료되었어도 종결평가회 불참 시 이수 불가
- ※ **종결평가회 발표자료 미제출 시 과목 이수 불가 (강의실 > 실습과목 게시판 공지 확인)**
- 온라인 강의(1~7주차)는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중에 이수하지 않도록 함
- 온라인 강의 전체 출석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실습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률 과락으로 이수 불가
- ※ 주의 : 학습자 부주의로 온라인 강의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본 교육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 내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
 - ※ 근무시간 내 실습 진행 시 자신의 업무 수행 내용이 그대로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과 실습시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근무지에서 통상근로시간 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직장(현장) 체험 / 사회봉사 등 단기 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 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서류 제출 유의사항

1차 서류	모든 서류(원본)는 우편(등기) 발송을 원칙으로 함 (현장 접수 불가)
	모든 서식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
	실습 시작 3일 전까지(평일 기준) 본 교육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류 발송
	본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에 공문이 발송된 이후부터 실습 진행한 경우에만 실습시간 인정 ※ 주의 : 서류 미비 상태로 실습 진행 시 실습 인정 불가
2차 서류	모든 서류(원본)는 우편(등기) 발송을 원칙으로 함 (현장 접수 불가)
	모든 서식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 처리
	실습이 종료된 후 2차 서류를 목차 순으로 본드 제본하여 본 교육원에 등기 발송합니다. ※ 주의 : 스프링 제본 불가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와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의 실습 기간, 점수 부분은 테이프를 붙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 본 서식이 잘못 될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서류 제출기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
기타	1차 및 2차 서류 접수 후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실습생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나, 정상 처리된 실습생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주의 : 작성 오류 및 서류 미비로 확인될 경우 내용 보완을 위해 추가 서류를 재발송 해야 합니다. 상기 서류를 재차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실습 과목 성적 비율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기관이 실습생 평가)	출석수업(2회) 및 온라인 강의(1~7주차)	실습 일지 및 발표 (지도교수가 실습생 평가)	총점
50%	출석수업 - 3% (OT 2%+종결 1%) + 온라인 강의 - 7% = 10%	40%	100%

[첨부1] 평생교육실습 운영 개요

양성기관(K) =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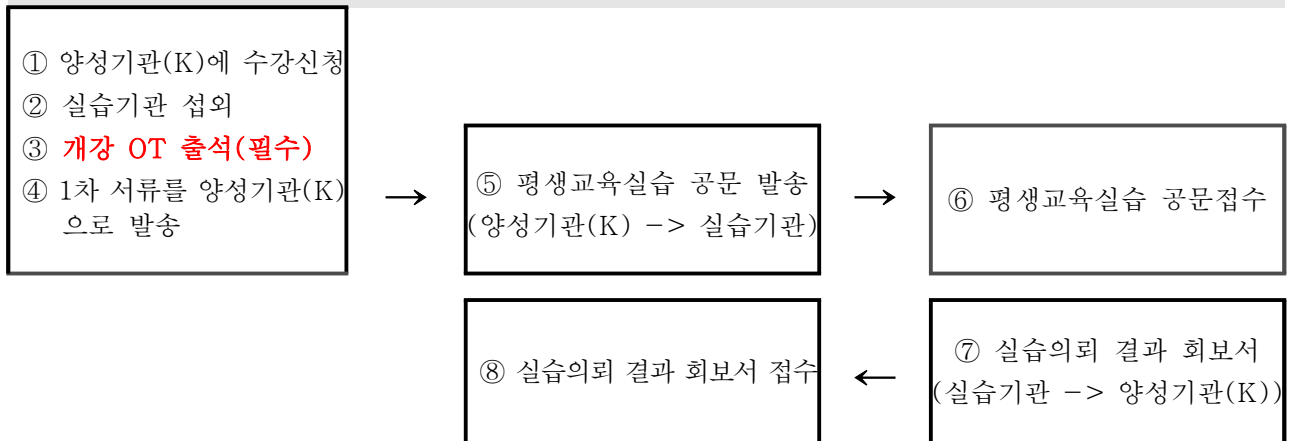
평생교육실습 운영 개요

실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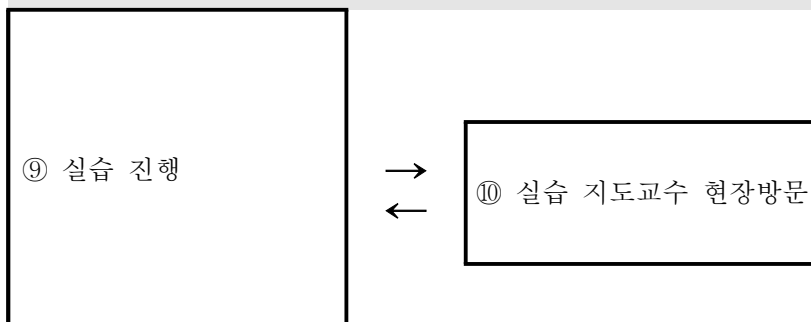
양성기관(K)

실습기관(평생교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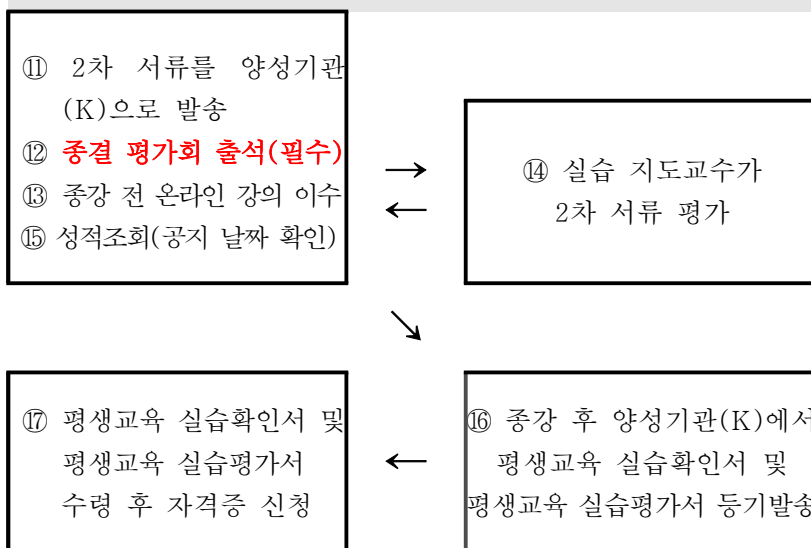
평생교육실습 시작 (전)



평생교육실습 진행 (중)



평생교육실습 종료 (후)



[첨부2]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구분	기관유형		예시	
평생교육법	①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고·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령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육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